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15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허 영

조 국・염태영・김준혁

임호선 · 김승원 · 박희승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해도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음.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집행력과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를 "다음 각 목에"로, "범죄와 그 소속 관서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를 "범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를 위반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9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	<u>다음 각 목에</u>
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	<u>범죄</u>
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	
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u>범죄</u>	
<u><신 설></u>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
	에서의 범죄
<u><신 설></u>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
	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
	법」 제41조를 위반한 범

	<u> </u>
10. ~ 50. (생 략)	10. ~ 50. (현행과 같음)